

Fi 자유해지 정기예금(변동)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**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**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- ◆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, **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**

구 분		내 용												
상품명		• Fi 자유해지 정기예금(변동)												
가입대상		• 개인, 개인사업자												
가입기간		• 36개월												
가입금액		• 10만원 이상 ~ 1억원												
한도금액		• 가입 채널별 (①영업점/②인터넷뱅킹, SB톡톡+/③다올디지털뱅크 Fi(파이)) 고객당 최대 1억원												
금리유형		• 3개월 단위 변동금리												
가입채널		• 대면(영업점), 비대면(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(SB톡톡+, 다올디지털뱅크 Fi(파이)))												
이자지급시기		• 만기일시지급식 (복리식)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												
예금자 보호여부 [해당]		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 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												
제한 사항		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• 질권 설정 : 가능 (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												
이자율 (26.07.02 현재)	기본	•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• 본 상품은 3개월단위 변동금리이므로, 가입후 매 3개월마다 약정이율과 중도해지이율이 함께 변경됩니다. 아래의 기준에 따라 이율이 변동됩니다. -약정이율 : 회전시점의 가입채널별 'Fi저축예금' 금리 + 0.30% • 가입기간 내 중도해지이율 변경되는 경우, 다음 회전일부터 변경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												
		<table><tr><th>(연,세전)</th><th>대면 (영업점)</th><th>비대면 (인터넷뱅킹, SB톡톡+)</th><th>비대면 (다올디지털뱅크 Fi(파이))</th></tr><tr><td>기본이율</td><td>3.30%</td><td>3.30%</td><td>3.30%</td></tr></table>				(연,세전)	대면 (영업점)	비대면 (인터넷뱅킹, SB톡톡+)	비대면 (다올디지털뱅크 Fi(파이))	기본이율	3.30%	3.30%	3.30%	
		(연,세전)	대면 (영업점)	비대면 (인터넷뱅킹, SB톡톡+)	비대면 (다올디지털뱅크 Fi(파이))									
	기본이율	3.30%	3.30%	3.30%										
만기후	•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후이자율 적용 <table><tr><th>경과기간</th><th>이 율</th></tr><tr><td>1개월 이내</td><td>마지막 회전도래시 약정이율 또는 만기시점 동일상품 신규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</td></tr><tr><td>1개월 초과</td><td>연0.1%</td></tr></table>				경과기간	이 율	1개월 이내	마지막 회전도래시 약정이율 또는 만기시점 동일상품 신규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	1개월 초과	연0.1%				
경과기간	이 율													
1개월 이내	마지막 회전도래시 약정이율 또는 만기시점 동일상품 신규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													
1개월 초과	연0.1%													
만기이자 계산방법		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 colspan="2">이자 계산식</th></tr><tr><td></td><th>월 단위</th><th>일 단위</th></tr><tr><td>복리식</td><td>원금×{(1+이율/12)ⁿ-1} (n은 경과월수)</td><td>(원금+월복리이자)×이율/365×일수</td></tr></table>				구 분	이자 계산식			월 단위	일 단위	복리식	원금×{(1+이율/12) ⁿ -1} (n은 경과월수)	(원금+월복리이자)×이율/365×일수
구 분	이자 계산식													
	월 단위	일 단위												
복리식	원금×{(1+이율/12) ⁿ -1} (n은 경과월수)	(원금+월복리이자)×이율/365×일수												
원천징수		•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*)을 공제하여 지급 (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)												

구 분	내 용
중도해지 이율	신규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, 약정이율 적용 (단, 약정이율은 매 3개월마다 변경된 금리 개별적용) <예시> 개설일자(예: 6월) 기준으로 매 3개월 해당일자(예: 6월)마다 약정이율이 변경됩니다. 예) 3.0% 적용 (신규일 고시금리) 예) 4.0% 적용 (화전일 고시금리) (1,2 중 낮은 이율) 1. 약정이율 2. 만기일 판매이율 0.1% 신규일 3개월 경과 중도해지일 3개월 경과 만기일 1개월 초과 중도해지이율 1 회전구간: 예) 3.0% 적용 (신규일~화전일 전일까지) 2 회전구간: 예) 4.0% 적용 (화전일~해지일 전일까지)
위법계약 해지권	-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-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자료열람 요구권	-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의 목적,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 -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,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. - 저축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예금 해지 시 불이익	-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, 본 상품은 약정이율과 중도해지이율이 동일한 상품입니다. - 매3개월마다 기본금리가 변경될 때 중도해지이율도 함께 변경되므로 중도해지시점에 따라 가입시점 중도해지이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세제혜택	-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- 가입한도 :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천만원 이내 - 가입대상 :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「기초연금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※ '20.1.1. 이후 가입(자동재예치) 분부터 「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」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분할해지	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
만기해지 사전신청	- 자동해지 -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(타행포함)로 이체 - 자동재연장(원금연장 또는 원리금연장) 신청은 불가합니다.
연계·제휴 서비스	■ 해당사항 없음 □ 해당사항 있음

[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]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44-67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daolsb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**금리변동형 정기예금**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,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다올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**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**,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**예금거래의 주요내용,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**

년 월 일 예금주: (서명/인) 대리인: (서명/인)